

# 한화솔루션 이사회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 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권 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 2 장 구 성

### 제 4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제 5 조 (의 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의장이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 장 회 의

### 제 6 조 (종 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7 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8 조 (소집 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3일 전에 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9 조 (부의 절차)

- ①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이사 또는 업무집행임원이 작성하여 1주일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전항의 의안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

## 제 10 조 (결의 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상기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1 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재무제표의 승인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
-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2) 주식배당 결정
-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4) 이사의 보수
- 15)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관한사항

- 1)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해임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공동대표의 결정
-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6)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8)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9) 지점·공장·사무소·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0)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2) 연간경영계획, 장기사업계획, 회사의 기본정책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1,0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6)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대여(금전 또는 유가증권)

7)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타 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8)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타인을 위한 신규 보증 또는 담보 제공

9)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10) 자기주식의 소각

11)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에 자산(시설, 출자 제외)의 취득 및 처분

12)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대규모 신규 차입

13) 10억 이상의 기부금 집행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3)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4) 기타 법령, 공시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 1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 설치,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총수의 2/3이상 이어야 하고,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13 조 (위 임)

- 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 의 집행을 대행 시킬 수 있다.

## 제 14 조 (관계인의 출석)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금융, 회계, 법률, 기타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 15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16 조 (의사록)

-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제 17 조 (문서의 보존)

이사회 부의안건과 의사록은 간사가 보존한다.

## 제 18 조 (간사)

- ① 이사회는 1인의 간사와 1인의 보조간사를 두며, 의장이 지명한다.
- ② 간사와 보조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것 이외는 1998년 5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9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3.1.5, 3.2.1, 3.2.2에 정한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8년 1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